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는 이렇게 ①

글 쓰는 순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 이번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제도 7월호

건설기술자 상호인정

건설기술자와 관련한 질의 및 회신..... 8월호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관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서 증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I.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 일반

1.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 건설관련업체¹⁾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²⁾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³⁾에 신고(변경 신고 포함)할 수 있음(건기법 제6조의2, 시행령 제7조의3 및 시행규칙 제4조의2)

○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경력증,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을 발급

2.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주요 연혁

① 건설관련업체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보고 의무화('89. 10. 25)

②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의무화('95. 1. 5)

-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의무화
- 건설관련업체의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 의무

③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임의화('99. 4. 15)

④ 건설관련업체의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 의무 폐지('05. 7. 1)

3.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절차

○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또는 제9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

-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 증명사진 1매(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 대한건축사협회
측량업자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 대한측량협회
엔지니어링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건설컨설팅협회

* 1) 건설관련업체 :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감리전문회사,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측량업자 등

* 2)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건기법 제2조8호)

* 3)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5개 기관(건기법 제39조제2항, 시행령 제61조)

-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부록의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 68호(건설기술 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 참조

4. 학·경력건설기술자 제도개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06. 12. 29)을 통해 학력·경력기술자제도<시행령 제4조 별표 1 : 별첨 참조> 개선 ☞ 시행 시기 : '07. 3. 1

-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개선

- 학·경력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하되 이미 배출된 학·경력기술자는 법적 지위 계속 인정

- 기술자격자중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

'07. 2. 28까지의 경력·학력 및 자격 등을 '07. 8. 31까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며, 승급교육은 '08. 2. 29까지 이수하여야 함

5. 법령 위반시 제재사항

○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12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

- 과태료 : 법 제43조제2항제1의3호 및 시행령 제63조제3항

- 업무정지 :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 등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12월의 업무정지

(법 제42조의2제4호,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 경력·학력·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42조의2제1호)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취소 또는 3년 이내의 자격정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26조제2항)



고추와 다이어트

우리가 매운 것을 먹을 때 땀과 열이 나는 것은 체내에 지방이 연소되고 있다는 증거다. 실제로 국내 여러 대학의 연구진들이 비만 여대생들에게 고추를 장기간 먹여보니 복부 지방이 많이 빠졌다. 고추의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 때문이다. 캡사이신은 또 비타민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영

양소의 파괴도 줄여준다. 일본에서는 고추 다이어트가 유행이어서 마시는 고추, 고추 캡슐, 고추 차, 고추 비누까지 등장했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 중에서

6.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 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 	
고 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중 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초 급 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비 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건설

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라.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기본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7.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등급

직무분야 \ 자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금속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비파괴검사 관련종목
전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자	산업계측제어		
토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콘크리트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콘크리트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조경 지적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스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	공장관리 품질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품질경영 승강기
교통	교통	교통	교통
화공·세라믹	화공	화공	화공
섬유	-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물리 섬유화학

8. 건설기술자 현황

- 건설기술자 현황(총괄)

(’06년 12월말 기준)

등급	총계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경력자 포함)
		소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계	574,036	284,388(50%)	17,643	178,597	88,148	289,648(50%)
특급	139,118	88,422(64%)	17,643	48,030	22,749	50,696(36%)
고급	41,256	20,001(48%)		14,935	5,066	21,255(52%)
중급	60,196	31,564(52%)		24,001	7,563	28,632(48%)
초급	333,466	144,401(43%)		91,631	52,770	189,065(57%)

- 분야별 건설기술자 현황

분야 \ 자격	합 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학력·경력자 (경력자 포함)
합 계	574,036	17,643	178,597	88,148	289,648
토 목	206,921	8,133	64,228	24,172	110,388
건축	227,323	6,682	74,074	40,683	105,884
기계	53,801	966	9,954	8,726	34,155
국토개발	29,163	534	8,875	4,114	15,640
안전관리	21,638	418	11,422	6,861	2,937
교통	1,461	207	897	4	353
환경	12,984	488	6,923	2,311	3,262
전기	9,006	85	413	114	8,394
금속	2,143	17	400	93	1,633
전자	4,729	29	61	61	4,578
광업자원	2,003	78	1,020	805	100
산업응용	564	5	199	164	196
화공및세라믹	2,109	1	129	40	1,939
섬유	191	0	2	0	189

9.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

기관명	관리대상 건설기술자	주소 및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03-55 www.kira.or.kr	경력관리팀 02-581-5711-4
대한측량협회	단일 측량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3-1 www.kasm.or.kr	회원관리팀 02-2670-7125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단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49-1 www.kenca.or.kr	회원지원팀 02-3019-3320
한국건설컨설팅협회	단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0-3 www.ekcca.or.kr	회원관리팀 02-571-348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위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술자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38-5 www.kocea.or.kr	등록관리팀 02-3416-9312-9
한국건설감리협회	감리원	서울 강남구 도곡2동 411-6 www.gamri.or.kr	회원지원실 02-3460-8631-7

〈다음호 계속〉



Commonsense – 상식

A farmer was detained for questioning about an elections scandal.
 “Did you sell your vote?” the prosecutor asked.
 “No sir,” the farmer protested, “I voted for that fellow because I liked him.”
 “I have good evidence that he gave you five dollars.”
 “It’s plain commonsense that when a fellow give you five dollars you like him.”

선거부정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농부가 잡혀왔다.
 “표를 팔았어요?”하고 검사가 물었다.
 “아닙니다. 난 그 사람이 좋아서 찍어준 겁니다.”라고 농부는 항변했다.
 “당신이 그로부터 5달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5달러를 준다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야 명백한 상식 아닙니까.”

「재미있는 영어이야기에 확 빠져들기」 중에서